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성실외국인근로자 명칭 변경 안내

1. 관련: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
2. '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'는 법상 용어가 아닌 관행상을 사용하는 용어로, 동 용어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종속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.
3. 이에 지방관서,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'성실외국인 근로자' 명칭을 '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(약칭 재입국특례자)'로 변경·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지방관서(지역협력부서), 고객상담센터장, 한국고용정보원장,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, 중소기업중앙회장, 대한건설협회장, 노사발전재단사무처장, 농협중앙회장, 수협중앙회장,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, 외국인력상담센터장

주무관 **김정훈** 행정사무관 **황청순** 외국인력담당 전결 2020. 2. 21.
관 **엄대섭**

협조자

시행 외국인력담당관-575

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153 팩스번호 044-202-8027 / kjhun7210@moel.go.kr / 대국민 공개